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3213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27443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3213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1880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10025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팩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심유진
판 결 선 고 2021. 12. 16.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188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6. 8.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26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6,400만 원은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액이 확정되면 피고가 직접 납부하기로 특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2억 4,000만 원은 부가가치세액이 확정되면 피고가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16. 소외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금을 청구채권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대금 26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된 매매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중 청구금액인 697,532,54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고, 그 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2018. 7. 23. 동안양세무서에서 납부되었는데, 이때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인 J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동안양세무서를 방문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에 앞선 2018. 7. 20.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특약이 피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으로서 유효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특약으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계약당사자가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등 참조).

채무의 면제 또는 면책의 경우에도,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만 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 또는 면책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516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피고의 계약금 지급의무를 부가가치세 직접 납부의무로 갈음하여 곧바로 계약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거나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특약을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계약금 지급의무가 이 사건 특약만으로 곧바로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매수인으로서 통상의 거래관행상 계약의 성립과 함께 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특약만으로는 과세관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는데도 피고로부터 장래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약속받고 계약금을 현실로 지급받을 권리를 미리 포기할 이유나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점, 만일 이 사건 특약만으로 계약금 지급의무가 소멸한다면 계약금 중 2,400만 원에 대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이 작성수수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계약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방법이나 계약금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원심의 판단대로 이 사건 특약이 피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특약이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유효하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 특약이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한 대항사유가 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특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한 소외 회사와 피고의 의사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계약금 지급의무의 면제소멸에 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계약금 지급의무의 면제소멸 여부에 관한 이 사건 특약 당사자의 의사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